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비 대면거래 방식의 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에 있어 “갑”의 수기전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본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거래 및 대상회원)

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를 총칭한다.
 ② “제휴기관”이란 “을”과 “카드” 사용과 관련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대행계약을 맺은 국내 및 국외 카드 발급사를 의미한다.
 ③ “대상회원”이란 “을” 및 “제휴기관”이 발급한 “카드”를 발급 받은 자로서, 해당 “카드”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대상거래”란 “갑”과 대상회원 간의 “을” 또는 “제휴기관”이 발행한 카드결제를 통한 비 대면 방식의 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이하 “대상거래”라 한다)을 의미한다.

제2조 (대상거래의 제한)

“을”은 대상거래의 월간 판매금액, 거래 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대상거래와 관련된 책임 및 승인)

① 대상거래에 있어서의 본인 미확인, 비정상적인 신용거래, 거래의 부당성 및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② “갑”은 대상거래에 있어서 “을”이 정한 본인확인 방법(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검증 등)에 따라 대상회원의 카드 결제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경우 “갑”의 본조 ①항상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상매출(현금유통, 전표유통을 위한 매출 등 포함)이 아닌 진성매출인 때에 한하여만 그러하다.
 ③ “갑”은 대상거래에 있어 대상회원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 건별로 거래승인번호를 “을”로부터 받아야 한다. 동 거래승인번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 및 회원의 결제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본조 ①항상의 “갑”의 책임을 “을”이 인수하거나 또는 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매출전표의 작성)

① “갑”은 대상회원과 대상거래에 있어, “을”이 정한 바에 따른 양식의 매출전표 또는 별도 협의에 의해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관리대장 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매출일자는 “거래승인번호”의 취득일자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특약에도 불구하고, “갑”의 매장을 직접 방문한 대상회원과 거래 시에 “갑”은 “을”의 가맹점 약관 제5조(신용판매방법), 제6조(신용판매시 준수사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관련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대금의 청구)

① “갑”은 제4조의 매출전표 또는 별도 협의된 신용카드 매출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을”에게 판매대금을 청구한다. 단, EDI나 DDC 등 기타의 특약에 의해 전표접수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사항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다.

제6조 (신용판매 대금의 지급 및 상계)

“을”은 “갑”이 제출한 매출전표를 접수한 후 “을”이 정한 대금지급 주기에 따라 “갑”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가맹점 수수료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액을 우선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도록 한다.

제7조 (자료보관 및 제출)

“갑”은 당해 대상거래에 따른 주문사실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전산자료 및 용역 제공 확인서 등)를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상계처리 및 부족액 반환)

대상거래에 관한 대상회원의 이의제기(주문사실 부인, 물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반환 등) 또는 비정상 매출과 관련하여, 대상거래에 있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거나(본 특약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 및 “갑”의 임·직원에 의한 허위거래를 포함한다) 할부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와 관련된 법령상 해당 거래에 대한 가맹점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갑”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이 부족 시에는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소재)

① “갑”이 “을”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이를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로 간주하고 동 매출에 대하여 매출 취소 또는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변조된 카드(국내, 해외) 거래에 의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7조 및 가맹점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2.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갑”이 취급하는 해외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가. 카드회원의 사용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나. “갑”이 판매대상 물품을 카드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대상 서비스를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갑”이 카드회원의 취소요청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갑”이 거래금액을 이점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
 ② “갑”은 대상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채권 보전)

① 본 특약과 관련하여 “갑”에 대한 “을”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갑”은 본 특약 체결 시 다음 각 호 중 택일하여 이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갑”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을”에게 제출한다. 단, 최저 보험금 또는 보증금은 _____ 만원으로 하며, 당해 보험 또는 보증 기간은 본 특약의 유효기간으로 하여 동 기간 중 발생한 “을”에 대한 “갑”의 모든 채권을 유효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의 부동산 또는 “갑”이 인정하는 제3 자의 부동산에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 최고액은 최소 _____ 만원으로 하되 “을”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때 근저당권 실행시 확보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갑”은 “갑” 소유의 _____ 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 예금에 대하여 “을”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예금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질권설정등서 등 관련 자료를 “을”에게 제출한다.
 4. “갑”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카드매출대금(가맹점 대금)중 일정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보증금 특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② 본조에 의한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의 제공, 근저당권 설정 및 그 실행 등의 사실은 본 계약 상의 다른 구제수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추후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채권보전의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변경운영 가능하다.

제11조 (특약의 해지)

① “갑”이 본 특약상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나, “갑”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을”은 본 특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특약의 체결 이후 일정기간(6개월) 동안 “갑”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을”은 본 특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특약의 변경 및 유효기간)

① 본 특약은 “갑” 및 “을”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조 ②항에 의거 본 특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채권보전에 대한 사항은 신규 특약 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본 특약 제10조상의 보전조치를 즉시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갑”의 의무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

본 특약은 가맹점 규약에 우선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 규약 및 “을”의 내규에 따르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특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본사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20 ____년 ____월 ____일

“갑”

“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동 권 (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비 대면거래 방식의 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에 있어 “갑”의 수기전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본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거래 및 대상회원)

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를 총칭한다.
- ② “제휴기관”이란 “을”과 “카드” 사용과 관련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대행계약을 맺은 국내 및 국외 카드 발급사를 의미한다.
- ③ “대상회원”이란 “을” 및 “제휴기관”이 발급한 “카드”를 발급 받은 자로서, 해당 “카드”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④ “대상거래”란 “갑”과 대상회원 간의 “을” 또는 “제휴기관”이 발행한 카드결제를 통한 비 대면 방식의 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이하 “대상거래”라 한다)을 의미한다.

제2조 (대상거래의 제한)

“을”은 대상거래의 월간 판매금액, 거래 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대상거래와 관련된 책임 및 승인)

- ① 대상거래에 있어서의 본인 미확인, 비정상적인 신용거래, 거래의 부당성 및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 ② “갑”은 대상거래에 있어서 “을”이 정한 본인확인 방법(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검증 등)에 따라 대상회원의 카드 결제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경우 “갑”의 본조 ①항상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상매출(현금용통, 전표유통을 위한 매출 등 포함)이 아닌 진성매출인 때에 한하여만 그러하다.
- ③ “갑”은 대상거래에 있어 대상회원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 건별로 거래승인번호를 “을”로부터 받아야 한다. 동 거래승인번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 및 회원의 결제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본조 ①항상의 “갑”의 책임을 “을”이 인수하거나 또는 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매출전표의 작성)

- ① “갑”은 대상회원과 대상거래에 있어, “을”이 정한 바에 따른 양식의 매출전표 또는 별도 협의에 의해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관리대장 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매출일자는 “거래승인번호”의 취득일자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특약에도 불구하고, “갑”의 매장을 직접 방문한 대상회원과 거래 시에 “갑”은 “을”의 가맹점 약관 제5조(신용판매방법), 제6조(신용판매시 준수사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관련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대금의 청구)

- ① “갑”은 제4조의 매출전표 또는 별도 협의된 신용카드 매출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을”에게 판매대금을 청구한다. 단, EDI나 DDC 등 기타의 특약에 의해 전표접수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사항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다.

제6조 (신용판매 대금의 지급 및 상계)

“을”은 “갑”이 제출한 매출전표를 접수한 후 “을”이 정한 대금지급 주기에 따라 “갑”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가맹점 수수료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액을 우선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도록 한다.

제7조 (자료보관 및 제출)

“갑”은 당해 대상거래에 따른 주문사실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전산자료 및 용역 제공 확인서 등)를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상계처리 및 부족액 반환)

대상거래에 관한 대상회원의 이의제기(주문사실 부인, 물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반환 등) 또는 비정상 매출과 관련하여, 대상거래에 있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거나(본 특약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 및 “갑”의 임·직원에 의한 허위거래를 포함한다) 할부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와 관련된 법령상 해당 거래에 대한 가맹점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갑”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이 부족 시에는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소재)

- ① “갑”이 “을”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이를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로 간주하고 동 매출에 대하여 매출 취소 또는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변조된 카드(국내, 해외) 거래에 의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7조 및 가맹점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2.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갑”이 취급하는 해외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가. 카드회원의 사용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 나. “갑”이 판매대상 물품을 카드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대상 서비스를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다. “갑”이 카드회원의 취소요청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갑”이 거래금액을 이증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
- ② “갑”은 대상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채권 보전)

- ① 본 특약과 관련하여 “갑”에 대한 “을”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갑”은 본 특약 체결 시 다음 각 호 중 택일하여 이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갑”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을”에게 제출한다. 단, 최저 보험금 또는 보증금은 _____ 만원으로 하며, 당해 보험 또는 보증 기간은 본 특약의 유효기간으로 하여 동 기간 중 발생한 “을”에 대한 “갑”의 모든 채권을 유효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의 부동산 또는 “갑”이 인정하는 제3 자의 부동산에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 최고액은 최소 _____ 만원으로 하되 “을”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때 근저당권 실행시 확보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갑”은 “갑” 소유의 _____ 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 예금에 대하여 “을”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예금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질권설정등서 등 관련 자료를 “을”에게 제출한다.
 4. “갑”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카드매출대금(가맹점 대금)중 일정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보증금 특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 ② 본조에 의한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의 제공, 근저당권 설정 및 그 실행 등의 사실은 본 계약 상의 다른 구제수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추후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채권보전의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변경운영 가능하다.

제11조 (특약의 해지)

- ① “갑”이 본 특약상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나, “갑”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을”은 본 특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 특약의 체결 이후 일정기간(6개월) 동안 “갑”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을”은 본 특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특약의 변경 및 유효기간)

- ① 본 특약은 “갑” 및 “을”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조 ②항에 의거 본 특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채권보전에 대한 사항은 신규 특약 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본 특약 제10조상의 보전조치를 즉시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갑”의 의무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

본 특약은 가맹점 규약에 우선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 규약 및 “을”의 내규에 따르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특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본사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 ①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본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20 ____년 ____월 ____일

“갑”

“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동 권 (인)